

### 군산시주요업무자체평가규칙 일부개정규칙

#### 1. 제안이유

- 「군산시주요업무자체평가규칙」에서 규정한 「자체평가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함)」를 운영함에 따라
-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체평가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함)」설치 및 운영근거 마련

#### 2. 주요내용

- 자체평가 위원회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 설치 및 운영근거를 마련함 (안 제15조의 2)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18조

군산시주요업무자체평가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군산시장 권한대행 이 수



2014년 6월 2일

군산시 규칙 제554호

## 군산시주요업무자체평가규칙 일부개정규칙

군산시주요업무자체평가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를 아래와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분과위원회) ①위원회는 위원회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심의사항에 따라 자체평가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③분과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④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과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서면으로 할 수 있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이전에 구성·운영되고 있는 분과위원회는 이 규칙에 의하여 구성·운영된 것으로 본다.

군산시 공고 제2014-854호

군산시 공용차량 관리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4년 6월 2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공용차량관리에 관한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안전행정부의 공용차량 관리규칙 “차량교체기준” 개정 표준권고안을 반영하여 공용차량 교체기준을 완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관용차량 관리규칙 제명 변경

- 관용, 공용차량 등 혼용하여 사용되고 있는 두 가지 제명을 “공용” 으로 통일하고자 함

나. 공용차량의 사적인 용도 사용금지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20조)

다. 공용차량 교체기준 완화하고자 함(안 제13조 별표1)

- 대상 : 승용(업무), 승합, 화물용 자동차
- 개선 내용

(현 행) 최단 운행연한 7년 + 최단 주행거리 12만km 충족 시 교체가능

(개 선) 최단 운행연한 10년 또는  
총주행거리 12만km 초과 시(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은 7년 이상)

라.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용어 정비

### 3. 의견제출

규칙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4. 6. 23일 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 회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 (1) 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이유)
-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 573-703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군산시청)  
군산시청 회계과(전화 063-454-2376, 팩스 452-8161, 전자우편  
lhs3344@korea.kr)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회계과 계약계(전화 454-2376)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 군산시 규칙 제 호

## 군산시 관용차량 관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군산시 관용차량 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군산시 관용차량 관리규칙”을 “군산시 공용차량 관리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관용차량”을 “공용차량”으로 한다.

제2조제9호 중 “관용차량관리”를 “공용차량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 중 “수리함으로써”를 “수리하여”로 하며, 같은 조 제11호 중 “교환함으로써”를 “교환하여”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차량의 구분등)”을 “(차량의 구분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중 “구분하고, 차량의”를 “구분하고,”로, “내구연한”을 “차량 관리·운영 기준”으로 한다.

제6조 중 “절약시책등”을 “절약시책 등”으로 한다.

제9조 중 “별지 제1호 내지 제4호서식”을 “별지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서식”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6월이상 5년미”를 “6월 이상 5년 미”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증감등”을 “증감 등”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특수용차량”을 “특수용 차량”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변경등으로 동일 차종중”을 “변경 등으로 동일 차종 중”으로 한다.

제13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업무용 승용차, 중형·소형·경형 승합차, 화물자동차는 최단운행연한 10년을 경과하거나 최단주행거리가 12만 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 이 경우에는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이어야 한다.
2. 전용 승용차는 최단운행연한 7년을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 12만 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운행하여야 하고, 대형승합차, 특수용자동차는 최단운행연한을 각각 8년, 7년을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
3.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확인이 있어야 한다.
4. 최초 등록일 부터 별표 1에 따른 최단운행연한의 3분의2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다른 자동차 종합정비업자의 검사확인이 있어야 한다.

5. 정부시책상 차량 교체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4조 중 “하는 때”를 “하는 경우”로 한다.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발생한 때”를 “발생한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이유없이 2년이내”를 “이유 없이 2년 이내”로 한다.

제18조 중 “대장정비 등”을 “대장정비 등에”로 한다.

제19조제1항 후단 및 제2항 중 “필요한 때”를 각각 “필요한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아니하는 때”를 “아니하는 경우”로, “아니되며”를 “아니 되며”로, “있을 때”를 “있을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20일이내”를 “20일 이내”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관용차량”을 “공용차량”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공용차량은 정당한 사유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제2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2호 내지 제6호”를 “제2호부터 제6호까지”로 한다.

제27조제2항 및 제3항 전단 중 “제반업무”를 각각 “모든 업무”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연1회이상”을 “연1회 이상”으로 한다.

제30조제3호 중 “사유없이”를 “사유 없이”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수수하는”을 “받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호 중 “지역외”를 “지역 외”로 하고, 같은 조 제12호 중 “유류 수수행위”를 “유류를 받는 행위”로 한다.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운전중”을 “운전 중”으로, “발생한 때”를 “발생한 경우”로, “간접적으로다음”을 “간접적으로 다음”으로 한다.

별표 1은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1]

**차종별 차형·배정대상 및 차량 관리·운행 기준 (제4조· 13조관련)**

차종	차형	배정대상	차량관리·운행기준
승용 (전용)	대형	· 시장 · 부시장 · 시의회·의장	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 일부터 7년을 경과하고 최단주행거 리 12만km를 초과한 경우
승용 (업무용)	대형	· 시 본청	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 일부터 10년 경과 또는 최단주행 거리 12만km를 초과한 경우(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
	중형	· 단위부서 · 시 본청 · 시 의회	
	소형·경형	· 단위부서	
승합용	대형	· 단위부서	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 일부터 8년을 경과한 경우
	중형·소형·경형	· 단위부서	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 일부터 10년 경과 또는 최단주행 거리 12만km를 초과한 경우(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
화물용	대형·중형·소형·경형	· 단위부서	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 일부터 10년 경과 또는 최단주행 거리 12만km를 초과한 경우(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
특수용	대형·중형·소형·경형	· 단위부서	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 일부터 7년을 경과한 경우

※ 대형·중형·소형 및 경형의 구분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정하는 자동차의 종류 중 규모에 관한 기준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군산시 관용차량 관리규칙</u></p>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u>군산시 관용차량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 8. (생략)</p> <p>9. “차량 총괄기관”이라 함은 차량 정수관리와 차량 유지관리를 총괄하는 본청의 <u>관용차량관리</u> 주관부서를 말한다.</p> <p>10. “정비”라 함은 차량을 단계적, 계통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함을 조기에 발견 <u>수리함으로써</u> 항상 운행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p> <p>11. “수리”라 함은 파손된 차량과 사용이 곤란한 부속품 또는 결합체를 검사·분해하여 소재접합 또는 <u>교환함으로써</u> 사용 가능한 상태로 복구시키는 것을 말한다.</p> <p>제4조(<u>차량의 구분등</u>) 차량의 차</p>	<p><u>군산시 공용차량 관리규칙</u></p> <p>제1조(목적) ----- <u>공용차량</u>-----</p> <p>-----.</p> <p>제2조(용어의 정의) -----</p> <p>-----.</p> <p>1. ~ 8. (현행과 같음)</p> <p>9. -----</p> <p>----- <u>공용차량관리</u> -----</p> <p>-----.</p> <p>10. -----</p> <p>----- <u>수리하여</u>-----</p> <p>-----.</p> <p>11. -----</p> <p>-----</p> <p>----- <u>교환하여</u>-----</p> <p>-----.</p> <p>제4조(<u>차량의 구분 등</u>) -----</p>

중은 승용·승합용·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하고, 차량의 차종별 차형·배정대상 및 내구연한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정수배정 제한) 차량 총괄기관의 장은 차량보유 과다 또는 에너지 절약시책등 필요한 경우에는 정수배정을 제한하거나 또는 차량정수의 차형기준을 하향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제9조(정수의 배정절차) 단위기관의 장이 차량정수배정·임시차량정수배정·차종 변경승인·차형변경승인·차량교체승인·차량교환승인을 차량 총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 내지 제4호서식에 별지 제13호서식을 첨부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제10조(임시차량 정수의 배정) ① 단위기관이 6월이상 5년미만의 한시적인 공사·조사 또는 외국기관등과의 협력, 그 밖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차량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기한부로 임시 차량정수를 배정할 수 있다.  
② (생략)

-----  
--- 구분하고,-----  
----- 차량 관리·운영 기준-.

제6조(정수배정 제한) -----  
-----  
- 절약시책 등 -----  
-----  
-----.

제9조(정수의 배정절차) -----  
-----  
-----  
-----  
-----  
별지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서식  
-----  
-----.

제10조(임시차량 정수의 배정) ① ----- 6월 이상 5년 미-----  
-----  
-----  
-----  
-----  
-----  
-----  
-----  
-----  
-.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차종변경 승인)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차종변경은 해당 기관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차종별 운행량의 증감 등으로 승합용·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의 차종상호간에 차종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제12조(차형변경 승인) ① 단위기관의 차형변경은 승합용·화물용 및 특수용차량에 한하되, 그 변경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총괄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차형변경은 당해 단위기관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업무량의 변경등으로 동일 차종중에서 차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제13조(차량교체 승인)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차량을 교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 1. 차량의 운행기간이 내구연한

제11조(차종변경 승인) ① (현행과 같음)

② -----  
-----  
----- 증감 등 -----  
-----  
-----  
-----.

제12조(차형변경 승인) ① -----  
-----  
----- 특수용 차량 -----  
-----  
-----  
-----.

② -----  
-----  
----- 변경 등으로 동일 차종 중 -----  
-----.

제13조(차량교체 승인)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1. 업무용 승용차, 중형·소형

을 초과하고, 차량의 최초등록일부터 총주행거리가 12만킬로미터 이상인 경우(단, 특수차량은 제외할 수 있다)

2. 사고로 인한 차량의 파손으로 수리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사고 확인과 당해 차량의 보험회사의 보상확인 및 차량정비업체의 수리 사용불가에 대한 확인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3. 경제적 수리한계가 초과되는 경우

4. 정부의 에너지절약 시책 등 차량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경형 승합차, 화물자동차는 최단운행연한 10년을 경과하거나 최단주행거리가 12만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 이 경우에는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이어야 한다.

2. 전용 승용차는 최단운행연한 7년을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 12만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운행하여야 하고, 대형승합차, 특수용자동차는 최단운행연한을 각각 8년, 7년을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

3.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확인이 있어야 한다.

4. 최초 등록일 부터 별표 1에 따른 최단운행연한의 3분의2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 종합정비업자

<신 설>

제14조(차량교환의 승인) 지방자치단체의 단위기관 상호간에 차량을 교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차량 총괄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5조(정수의 직권감축 등) 차량 총괄기관의 장은 정수를 배정받은 기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직권으로 차량정수를 감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1. (생략)
2. 차량정수를 배정 받은 날로부터 특별한 이유없이 2년 이내에 차량을 구입하지 아니할 경우
3. (생략)

제18조(정수대장 정비 등) 차량정수를 배정하는 차량 총괄기관의 장은 매년 1월에 차량정수 배정 사항과 실제 차량구입·등록사항 등을 조사하여 대장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의 검사확인이 있어야 한다.

5. 정부시책상 차량 교체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4조(차량교환의 승인) -----  
-----  
----- 하는 경우-----  
-----  
-----.

제15조(정수의 직권감축 등) ----  
-----  
-----  
----- 발생한 경우----  
-----  
-----.

1. (현행과 같음)
2. -----  
----- 이유 없이 2년 이내--  
-----

3. (현행과 같음)

제18조(정수대장 정비 등) -----  
-----  
-----  
----- 대장정비 등에 -----  
-----.



서는 아니되며, 승인확인서에 등록을 말소하여야 할 차량의 표시가 있을 때에는 동 차량의 등록말소를 동시에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차량을 등록하였거나 등록을 말소한 단위기관의 장은 20일 이내에 별지 제7서식에 따라 등록 또는 등록 말소보고서를 당해 총괄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차량 집중관리부서 지정)

① 단위기관의 장은 관용차량 담당 주무부서를 집중관리부서로 지정하여 차량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생략)

<신설>

제21조(차량 관리방법) ① (생략)

② 집중관리부서는 해당 차량에 대한 차량점검·정비·수리업무와 기타 차량운영관리 전반을 담당한다.

③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을 받은 2차 관리부서는 당

-----  
----- 있을 경우-----  
-----.

④ -----  
-----  
----- 20일 이내-----  
-----  
-----  
-----.

제20조(차량 집중관리부서 지정)

① ----- 공용차량 -----  
-----  
-----.

② (현행과 같음)

③ 공용차량은 정당한 사유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차량 관리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 ----- 그  
밖에 -----.

③ ----- 해당 -----

해 차량의 배차관리 등 운행관리만 담당한다.

제26조(기록관리) 차량 총괄기관의 장은 제1호 규정에 따라 서류를 비치하여야 하며 단위기관의 장은 보유차량에 대하여 제2호 내지 제6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차량관리의 효율성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서식 중 일부를 단위기관의 실정에 맞추어 개서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 6. (생략)

제27조(차고운영)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차고를 설치한 단위기관의 장은 소속 운전원 중에서 차고장 1명을 지정하여 차고내의 제반업무를 수행토록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을 받은 차고장은 차량 집중관리부서의 지휘감독을 받아 보유차량 운행관리와 운전원관리 등 차고내의 제반업무를 담당한다. 이 경우 차량 운전원은 차고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28조(지도·점검 등) ① 차량

-----  
-.

제26조(기록관리) -----  
-----  
-----  
----- 제2호부터 제6호까지-----  
-----  
-----.

1. ~ 6. (현행과 같음)

제27조(차고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모든 업무-----  
-.

③ -----  
-----  
-----  
----- 모든 업무-----  
-----.

제28조(지도·점검 등) ① -----

총괄기관의 장은 연1회이상 산하기관의 차량관리·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생략)

제30조(금지사항) 운전원은 근무시 다음 사항을 금지하여야 한다.

- 1.·2. (생략)
- 3. 정당한 사유없이 배차된 담당차를 이탈하는 행위
- 4. ~ 7. (생략)
- 8. 승차자로 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 9. 운전중에 배차된 지역외로 변경 운행하는 행위
- 10.·11. (생략)
- 12. 산하기관 및 민간인으로부터 유류 수수행위
- 13. (생략)

제32조(사고보고) 운전원은 운전중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다음 사항을 차고장 또는 차량관리 부서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 1. ~ 7. (생략)

----- 연1회 이상 -----  
-----  
-----.

② (현행과 같음)

제30조(금지사항) -----  
-----.

- 1.·2. (현행과 같음)
- 3. ----- 사유 없이 -----  
-----
- 4. ~ 7. (현행과 같음)
- 8. ----- 받는 -----  
---
- 9. ----- 지역 외-----  
-----
- 10.·11. (현행과 같음)
- 12. -----  
유류를 받는 행위
- 13. (현행과 같음)

제32조(사고보고) ----- 운전중 ----- 발생한 경우-----  
--- 간접적으로 다음 -----  
-----.

- 1. ~ 7. (현행과 같음)

군산시 공고 제2014 -885호

## 군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군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를 전부개정 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4년 6월 2일

# 군 산 시 장

1. 조례안명 : 군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 2014. 6. 2. ~ 2014. 6. 23.(21일)

3. 제안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전면개정으로 인해 이에 부합하는 내용을 반영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재난을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구분(안 제2조)
  - 현행 인적·기반재난을 “사회재난”으로 통합
  - 인적·기반재난, 기반체계, 기반보호총괄관 등의 용어 폐지
-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기능을 상세화(안 제3조)
  - 재난예방의 및 수습 등 총괄·조정, 재난의 상황관리 등 응급조치, 재난의 수습활동, 재난의 예·경보 발령 등으로 구체화
- 재난수습 주관부서 지정 신설(안 제4조)

- 재난사고의 유형에 따라 48개의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지정
- 자연·사회재난별 실무반 편성기준을 단계별로 구분(안 제6조)
  - 현행 국단위의 실무반을 13개 협업기능별로 편성하여 임무 및 역할 부여 등 신설
- 상황판단회의 개최에 관한 사항을 상세화(안 제7조)
  -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여부 협의사항등을 구체화
- 재난현장상황관리관 파견 (안 제11조)
- 재난 예·경보 발령 및 위기관리 매뉴얼 활용 조항 신설 (안 제13조~제14조)
-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구성·운영, 심의사항등 신설 (안 제17조~제18조)
- 사회재난의 피해지원기준안 신설(안 제19조)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사회재난에 대한 피해 지원 기준안 신설
- 재난안전대책본부 문서관리 규정 신설(안 제21조)
  - 재난안전대책본부 전결규정 마련

## 5. 의견제출

이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6월 2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 안전총괄과장, 주소 : 군산시 시청로 17, 팩스 : 063-452-4959)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안전총괄과(☎ 063-454-384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 군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1부

군산시 조례 제 호

## 군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군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군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운영하는 군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의 자연재난과 나목의 사회재난을 말한다.
2. “준비단계”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평상시 재난의 예방·대비 및 상황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단계를 말한다.
3. “비상단계”란 재난의 발생 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거나, 재난이 발생하여 재난의 효과적인 대비·대응 및 복구(이하 “수습”이라 한다)를 위하여 실무반을 편성하여 군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군산시 대책본부”라 한다)를 운영하는 단계를 말한다.
4. “자연재난대책기간”이란 자연재난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13조에 해당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운영하는 다음 각 목의 기간을 말한다.
  - 가. 여름철의 경우 :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 나. 겨울철의 경우 : 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
5. “예방”이라 함은 평상시 재난 위험 요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사전에 수행

하는 재난예방사업, 각종 예방계획의 수립 등 재난 예방을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6. "대비"라 함은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를 가정하여 재난 상황 하에서 수행하여야 할 제반활동을 미리 준비하는 단계로 재난대비 교육·훈련, 매뉴얼 정비, 비상대처계획수립 등의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7. "대응"이라 함은 재난 발생시 대처하는 일련의 활동으로 현장지휘, 응급조치, 긴급구조, 상황관리, 기관간의 협조·지원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8. "복구"라 함은 재난발생 이전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활동으로 복구계획의 수립·시행, 재난상황 대응체계의 평가, 개선대책 등을 포함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9.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함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군산시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말한다.

## 제2장 군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기능 및 구성

제3조(군산시 대책본부의 기능)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에 관한 총괄·조정
2. 재난의 상황관리 및 동원명령·대피명령·통행제한 등의 응급조치
3. 재난 피해상황의 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등의 수습활동
4.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상·재정상 조치요구
5.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의 발령
6.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7. 중앙 및 도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연계된 업무
8. 그 밖에 군산시 대책본부본부장("본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군산시 대책본부 구성 등) ① 법 제16조에 따라 운영하는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본부장은 시장이 되며, 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차장은 부시장이 되며, 본부장을 보좌한다.
  3. 총괄조정관은 건설교통국장으로 하고, 대책본부의 행정지원과 대외협력 업무를 담당한다.
  4. 통제관은 재난의 종류에 따라 그 수습을 주관하는 국장이 되며 본부장을 보좌하면서 재난 수습업무 전반을 통제한다.
  5. 담당관은 재난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통제관을 보좌하고 당해 재난의 대책본부 상황총괄반장이 된다.
  6. 실무반은 시 공무원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등으로 부터 파견 받은 사람으로 편성하며, 재난의 수습업무를 수행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시 대책본부의 실무반 편성 등 재난수습 업무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재난수습 주관부서에서 관장한다.

제5조(직무대행) 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4조제1항 각 항목의 차장·통제관 및 담당관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3장 군산시 대책본부 운영 및 근무체계

제6조(군산시 대책본부 운영체계 및 실무반 편성) ① 법 제16조에 따라 운영하는 군산시 대책본부는 준비단계와 비상단계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실무반 편성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준비단계 : 재난상황실장이 담당관 역할을 수행하며 재난상황실에서 실무반의 기능을 수행하며 편성기준은 별표 2와 같다.
2. 비상단계
  - 가. 자연재난 : 비상단계는 1, 2, 3단계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단계별 실무반원의 편성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나. 사회재난 : 통제관 및 담당관의 역할은 해당 재난을 관장하는 주관부서

의 장이 되며, 실무반 편성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다. 실무반별 업무와 역할중 자연재난은 별표 5로 하고, 사회재난은 별표 6과 같다.

② 비상단계 군산시 대책본부의 운영여부 판단은 제7조의 상황판단회의와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제1항제2호 따른 비상단계 군산시 대책본부를 운영하는 때에는 실무반원은 군산시 대책본부상황실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④ 군산시 대책본부에 근무하는 실무반원은 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성실하게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7조(상황판단회의) ① 대책본부장은 재난을 효율적 수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는 상황판단을 위한 회의(이하 “상황판단회의”라 한다)를 개최할 수 있다.

1. 비상단계 지역대책본부 운영 여부
2. 실무반 편성 및 관계기관 파견 범위
3. 재난상황의 심각성, 전개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확대가능성 등의 재난상황 분석 및 재난 진행단계별 대처방안
4. 유관기관과 민간단체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재난상황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상황판단회의는 본부장이 직접 개최하거나 차장·통제관·총괄조정관 및 담당관이 개최할 수 있다.

③ 상황판단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소집하여 개최한다.

1. 재난안전상황실장
2. 소관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3. 재난과 관련이 있는 유관기관 직원 또는 관계분야 전문가
4. 그 밖의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관계기관에 근무자 파견요청 등) ① 본부장은 제6조의 실무반을 편성하여 군산시 대책본부를 운영하는 때에는 법 제34조의5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

는 기관별 역할과 기능 등을 고려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파견을 요청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파견할 직원의 성명·소속·연락처 등을 기재한 근무자 명단을 본부장에게 신속하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계기관에서 파견 온 인력은 군산시 대책본부에서 근무하여야 하며, 본부장의 지휘에 따라야 한다. 다만, 재난상황에 따라 파견 근무인력 일부는 관계기관에서 비상 대기하도록 할 수 있다.

제9조(파견근무자의 사전교육 등) ① 본부장은 군산시 대책본부 상황실에 근무하는 파견인력이 재난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실무반으로 근무할 파견인력의 명단을 미리 제출받아 상황근무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8조제2항에 따라 파견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전교육을 받은 자를 우선하여 파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

제10조(파견 근무자의 임무 등) ① 군산시 대책본부에 파견된 사람은 본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부여 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파견 근무자중 복무상태가 불성실한 사람에 대하여는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기관의 장은 조치결과를 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4장 재난상황의 관리

제11조(현장상황관리관의 파견) ① 본부장은 신속한 재난수습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난이 발생한 지역에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할 수 있다.

② 현장상황관리관은 군산시 대책본부 소속 공무원과 관계 전문가로 구성할 수 있다.

③ 현장상황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 본부장에게 신속하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재난현장의 피해상황, 피해확산 및 진행양상 등에 관한 현황
2. 구조·구급 및 응급조치 진행상황 등 파악
3. 지역주민 대피 및 수습상황
4. 시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한 사항 등

④ 본부장은 현장상황관리관의 보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난상황에 대한 지원 및 수습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12조(군산시 대책본부의 지휘 등) ① 본부장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재난이 발생한 경우 신속한 재난 수습을 위하여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거나 지휘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은 재난 및 사고 현장의 체계적인 대응을 위하여 재난 및 사고 발생 현장 주변에 통합지휘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③ 본부장은 제2항에 따른 통합지휘소를 설치·운영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운영상황을 도 및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재난 예보·경보의 발령 등) ① 본부장은 법 제38조 및 영 제46조에 따라 지역단위의 예보·경보를 발령하거나 본부장에게 예보·경보의 발령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재난의 위기경보는 법 제34조의5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심·주의·경계·심각 등으로 단계를 구분하여 발령할 수 있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별도의 예보·경보의 발령기준이 있는 경우 그 기준을 따른다.

③ 본부장이 제2항에 따른 예보·경보를 발령하는 때에는 안전행정부장관과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④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재난관련 위험정보를 취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본부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재난 및 사고를 발생시킬 위험 징후
2. 기상상황, 홍수정보, 산불정보, 산사태 정보 등의 위험상황
3. 지역주민의 대피 또는 통제 등을 위해 필요한 정보
4. 그 밖에 지역 주민에게 사전에 알릴 필요가 있는 정보

제14조(위기관리 매뉴얼 활용 등) ①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34조의5에 따라 작성한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에 따라 재난관리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을 관리하는 공무원 또는 직원이 재난상황 하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의 내용을 이해하고 숙지하도록 평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 이외에 재난관리책임기관의 특성에 따라 개인별 행동요령 등을 수록한 실무편람 등을 별도로 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15조(재난현장의 조치 및 대응지원) ① 본부장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재난이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신속한 응급조치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본부장은 재난현장의 대응지원이 필요한 경우 자율방재단이나 민간·단체 대응인력을 재난현장에 파견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본부장은 재난상황 및 여론 등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등을 재난상황 모니터요원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민간기관·단체 또는 민간인이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을 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재난상황의 보고 등) ① 본부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때에는 법 제20조에 따라 재난상황을 지체 없이 전라북도 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재난상황의 보고는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의 규정을 따른다.

③ 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17조(군산시 대책본부회의의 구성·운영 등) ① 법 16조제2항에 따른 군산시 재난 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대책본부회의”라 한다)는 영 제21조의2조에 따라 각 호의 사항을 심의·확정한다.

1. 자체 복구계획에 관한 사항
2. 재난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3. 재난응급대책에 관한 사항
4. 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사회재난의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본부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대책본부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부시장
2. 국·소장
3.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대책본부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발생한 재난을 관장하는 과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④ 대책본부장이 군산시 대책본부회의의 의장이 되며, 대책본부회의를 주관한다.

⑤ 대책본부회의의 위원의 과반수이상의 참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대책본부회의의 소집 등) ① 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구두로 회의개최 사실을 통보하거나 현장에서 심의안건 등을 배부할 수 있다.

② 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해당 분야 재난과 관련하여 전문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동일 직위에 상당하는 사람으로 대신 참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관계자나 그 밖의 외부 전문가를 지역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본부장은 회의 내용을 정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⑤ 대책본부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9조(사회재난의 피해지원 기준 등) ① 본부장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사회재난에 대하여 법 제66조제4항에 따라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피해를 지원하기 위하여 피해금액 및 복구비용을 산정하는 때에는 별표 7의 지원금액 산정기준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③ 본부장은 제2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기초로 법 제66조제4항에 따라 군산시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④ 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제2호에 따른 사회재난의 피해복구를 위한 도비와 시비의 재원 부담률은 각각 전라북도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다.

제20조(피해상황 신고 등) ①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피해 신고서를 소관 관할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또는 관할 읍·면·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피해신고를 받은 부서의 장 또는 관할 읍·면·동장은 피해사실을 확인 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피해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작성한 피해대장은 복구계획 수립 및 피해지원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며, 피해가 발생한 다음 연도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제6장 보칙

제21조(군산시 대책본부 문서관리) 본부장 명의로 생산하는 문서는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의 공문서의 작성 및 처리 규정을 준용하여 관리한다.

제22조(사무의 전결사항) 군산시 대책본부 사무의 전결권자 및 전결 사항은 별표 8과 같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 재난수습 주관부서 (제4조제2항 관련)

재난관리 주관기관	재난 및 사고의 유형	주관부서
미래창조과학부	1. 우주전파 재난 2. 정보통신 사고 3. 위성항법장치(GPS) 전파혼신	정보통신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교육부	4. 학교 및 학교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인재양성과
외교부	5. 해외에서 발생한 재난	국제협력과
법무부	6. 교정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안전총괄과
국방부	7. 국방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안전총괄과
안전행정부	8. 공동구(共同溝) 재난(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공동구는 제외한다) 9. 정부중요시설 사고	해당없음 안전총괄과
문화체육관광부	10. 경기장에서 발생한 사고 11. 공연장에서 발생한 사고 12. 유원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체육진흥과 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
농림축산식품부	13. 가축 질병 14. 저수지 사고	농 정 과 건 설 과
산업통상자원부	15. 가스 수급 및 누출 사고 16. 원유수급 사고 17. 원자력안전사고(과업에 따른 가동중단을 포함한다) 18. 전력 사고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
보건복지부	19. 감염병 재난 20. 보건의료 사고	보건사업과 보건사업과
환경부	21. 수질분야 대규모 환경오염 사고 22. 식용수(지방 상수도) 사고 23.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 24. 조류(藻類) 대발생(녹조에 한정한다)	환경위생과 수 도 과 환경위생과 환경위생과

	25. 황사	환경위생과
고용노동부	26. 사업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인적 사고	투자지원과
국토교통부	27. 고속철도 사고 28. 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댐 사고 29. 도로터널 사고 30. 식용수(광역상수도) 사고 31. 육상화물운송 사고 32. 항공기 사고 33. 항공운송 마비 및 항행안전시설 장애	교통행정과 건설과 건설과 수도과 교통행정과 교통행정과 교통행정과
해양수산부	34. 조류 대발생(적조에 한정한다) 35. 조수(潮水)	해양수산과 해양수산과
금융위원회	36. 금융 전산 및 시설 사고	지역경제과
문화재청	37. 문화재 시설 사고	문화예술과
산림청	38. 산불 39. 산사태	산림녹지과 산림녹지과
소방방재청	40. 화재 41. 위험물 사고 42. 내륙에서 발생한 유도선 등의 수난 사고 43. 다중밀집시설 대형사고 44. 풍수해(조수는 제외한다) 45. 지진 46. 화산 47. 낙뢰 48. 가뭄	안전총괄과 안전총괄과 안전총괄과 안전총괄과 안전총괄과 안전총괄과 안전총괄과 안전총괄과

비고: 주관부서가 지정되지 아니한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본부장이 재난 및 사고 유형에 따라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정한다.

[별표 2]

### 준비단계 실무반 편성 기준(제6조제1항제1호 관련)

1. 가동기준 : 평상시
2. 실무반 편성

차 장	부시장
통 제 관	건설교통국장
총괄지원관	건설교통국장
담 당 관	재난안전상황실장
실 무 반	안전총괄과 공무원과 각 부서에서 파견된 인력이 실무반의 기능을 수행한다.

- 비고: 1. 준비단계는 안전총괄과 소속 직원이 지역대책본부 실무반의 기능을 병행하여 수행한다.
2. 재난안전상황실장은 필요한 경우,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직원을 파견 받아 실무반 근무인력을 보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별표 3]

**자연재난의 비상단계 실무반 편성 기준**(제6조제1항제2호 관련)

□ 비상 I 단계

1. 가동기준

가. 호우·대설: 호우·대설주의보

호우·대설경보

나. 태풍: 예비특보 발효시

2. 실무반 편성: 6명+ a

통제관	○ 본부장 차장 보좌	
담당관	○ 본부장, 차장, 통제관 보좌 및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 총괄	
근무인원	총 6+a명	
상황관리 총괄반	반장(1)	재난상황실장
	재난정보·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 (3)	- 재난 총괄부서(1) - 재난 주관부서(1) - 육군제9585부대, 군산경찰서, 기상청, 한국수자원 공사, 한국전력공사군산지사 등 자체 상황근무
시설응급복구 등 3개 협업기능(a)		시설응급복구(a), 재난수습홍보(a), 교통대책(a)

가. 근무방법

- 1). 상황관리총괄반: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총괄과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단 대설의 경우는 건설과에서 상황관리를 총괄한다)
- 2). 협업기능 실무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 비상 II 단계

1. 가동기준

가. 호우·대설: 호우·대설경보

나. 태풍: 태풍주의보 및 경보 발령시, 국지적으로 극심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2. 실무반 편성: 9+α+β

통제관	○ 본부장, 차장 보좌	
담당관	○ 본부장, 차장, 통제관 보좌 및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 총괄	
근무인원	총 9+α+β명	
상황관리 총괄반 (9명)	반장(1)	담당관
	재난정보·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2)	- 재난총괄부서(2)
	상황보고서 작성(3)	- 재난 총괄부서(1), 주관부서(2)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3)	- 재난 총괄부서(1), 주관부서(2) ※상황총괄, 재난관리시스템(NDMS) 운영지원
	행정지원반(1)	- 총무과(1)
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2개 협업기능(α)	긴급생활안정 지원(α), 재난현장환경정비(α), 긴급통신지원(α), 시설응급복구(α), 에너지기능복구(α), 재난수습홍보(α), 물자관리 및 자원지원(α), 교통대책(α), 의료·방역(α), 자원봉사관리(α), 사회질서유지(α), 수색구조·구급(α)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등(β)	- 육군제9585부대, 군산경찰서, 기상청, 국토관리청,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등	

가. 근무방법

- 1). 상황보고서 작성반: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 2).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반: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 3). 행정지원반: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 4). 협업기능 실무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 비상 Ⅲ단계

1. 가동기준

- 가. 호우·대설: 광역적인 호우·대설경보 발령 시
- 나. 태풍: 광역적인 태풍경보 발령 시

2. 실무반 편성: 20+α+β

통제관	○ 본부장, 차장 보좌	
담당관	○ 본부장, 차장, 통제관 보좌 및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 총괄	
근무인원	총 20+α+β명	
상황관리 총괄반 (11명)	반장(1)	담당관
	재난정보·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2)	- 재난총괄부서(2)
	상황보고서 작성(3)	- 재난 총괄부서(1), 주관부서(2)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5)	- 재난 총괄부서(1), 주관부서(4)
	행정지원반(1)	- 행정지원관실(1)
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2개 협업기능(α)	긴급생활안정지원(α), 재난현장환경정비(α), 긴급통신지원(α), 시설응급복구(α), 에너지기능복구(α), 재난수습홍보(α), 물자관리 및 지원지원(α), 교통대책(α), 의료·방역(α), 자원봉사관리(α), 사회질서유지(α), 수색구조·구급(α)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등(β)	- 육군제9585부대, 군산경찰서, 기상청, 국토관리청,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등	

가. 근무방법

- 1) 상황보고서 작성반: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 2)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반: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 3) 행정지원반: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 4) 협업기능 실무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별표 4]

## 사회재난의 비상단계 실무반 편성 기준 (제6조제1항제2호 관련)

1. 가동기준 : 가.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표준)상 위험수준이 심각단계에 이른 경우  
나. 중앙사고수습본부 또는 중앙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  
다. 상황판단회의 결과 지역대책본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경우
2. 실무반 편성

통 제 관	○ 본부장, 차장 보좌	
담 당 관	○ 본부장, 차장, 통제관 보좌 및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 총괄	
근무인원	총 8+a+β명	
상황관리 총괄반 (8명)	반 장(1)	담 당 관
	재난정보·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2)	- 재난총괄부서(2)
	상황보고서 작성 (5)	- 재난 총괄부서(1), 주관부서(4)
	행정지원반(1)	- 총무과(1)
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2개 협업기능(a)	긴급생활안정 지원(a), 재난현장환경정비(a), 긴급통신지원(a), 시설응급복구(a), 에너지기능복구(a), 재난수습홍보(a), 물자관리 및 자원지원(a), 교통대책(a), 의료·방역(a), 자원봉사관리(a), 사회질서유지(a), 수색구조·구급(a)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등(β)	- 육군제9585부대, 군산경찰서, 소방서, 한국전력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등	

※ 비고: 실무반 근무인원수는 재난 유형 및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증·감하여 운영할 수 있다.

## [별표 5]

## 자연재난 실무반 역할과 기능(제6조제1항제2호관련)

구 분	담 당 업 무	담당부서	
상 황 관 리 총 괄	재난정보·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	1. 기상정보 등 상황수집전파 2. 긴급상황 등 재난방송 요청 3. CBS 재난문자방송서비스 송출 승인 4. 재난상황 홈페이지 게재 및 관련기관 등 전파 5. 상시 모니터링시스템의 구축·운영 6. 재대본 회의 및 보고회 관련 장비 운영	안전총괄과
		1. 영상회의 준비·운영 2. 주요인사 주재회의 등 현장방문 일정수립, 자료 작성	주관부서
	상황보고서 작성	1. 펌프장 가동, 가저류지 확보 등 종합적인 홍수정보 파악 2. 호우피해정보관련 홍수통제소 등 관련기관에 제공 3. TV 방송 모니터링 4. 민심동향, 미담사례 등 조사	안전총괄과
		1. 일일상황보고서 작성·보고 및 상황일지 작성 2. 주요인사 재대본 방문시 보고서 작성 3. 피해정보의 수집·보고 및 해외 재난정보의 수집·분석 6. 인명피해 상황관리 7. 재산피해 상황관리 8. 재난지역 수습상황 관리 9. 각종 여론정보 수집 및 민원처리 등 관리	주관부서
	상황관리 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	1. 법 제11조에 따른 안전관리위원회, 재대본회의 개최 2. 상황판단회의 개최 및 대처계획 수립·보고	안전총괄과
		1. 현장상황관리관 및 중앙수습지원단 파견·관리 2. 대통령·국무총리·중앙대책본부장 및 소방방재청장 특별지시사항 처리 3. 비상근무 단계 결정 4. 관계기관 근무자 파견 요청 5. 재난상황판단예측 및 분석 등 정보 제공 6. 재난발생지역의 예·경보 발령 등 의사결정 지원 7. 인명피해 우려지역 출입통제·사전대피 등 추진실태 관리 8. 취약지역 출입통제 등 추진실태 관리	주관부서
	행정지원	1. 주요인사 방문시 의전업무 및 상황근무자 복무단속 2. 상황근무자 근무명령 3. 상황근무자 식사·야식 등 후생·복지	총무과
	긴급생활 안정지원	1. 재난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관련 업무 및 상황 관리 2. 재난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관련 홍보 및 지급 독려 3. 재해구호물자 확보·비축상황 관리 및 신속한 지원 4. 이재민 발생현황 관리 5. 이재민 수용 및 급식상황 파악 6. 재난구호활동상황 및 구호물품 지원상황 파악 7. 사망·실종자 유족 대책, 응급생계구호 실시	주민생활지원과
	재난현장 환경정비	1.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육상 및 해상의 환경오염물질(재난폐기물, 위험물 등) 피해상황 및 처리실태·관리 2. 육상 및 해상의 환경오염물질 처리를 위한 인력·장비·자재 등 지원 3. 재난쓰레기 수거처리 및 임시적환장 설치·운영 지도·확인	자원순환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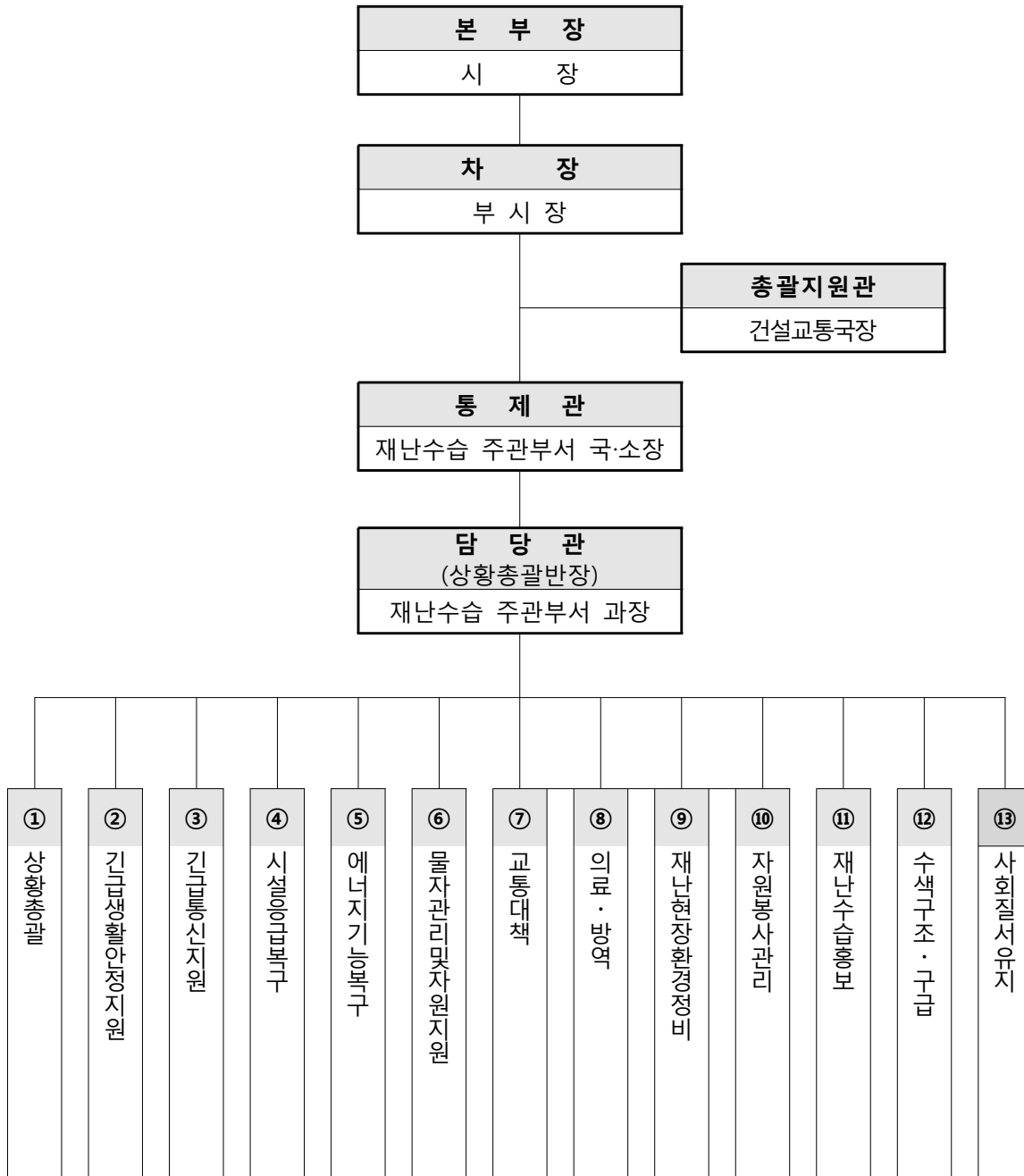
구 분	담 당 업 무	담당부서
긴급 통신지원	1.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통신시설 피해상황 파악 2. 통신시설 긴급소통상황 파악 3. 통신시설 인프라 긴급복구 지원	정보통신담당관
시설 응급복구	1.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공공·사유시설 피해상황 파악 2. 공공·사유시설 응급복구 상황 파악 3. 공공·사유시설 긴급복구를 위한 인력·장비·자재 등 지원	시설별 해당실·과 건설과등
에너지 기능복구	1.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국민생활 밀착형 시설(가스, 전기, 유류 등) 피해상황 파악 2. 국민생활 밀착형 시설·긴급복구 상황 파악 3. 국민생활 밀착형 시설·긴급복구를 위한 인력·장비·자재 등 지원	지역경제과
재난수습 홍보	1. 재난상황별 국민행동요령 홍보 2. 재난 예·경보 발령사항 등의 전파(TV·라디오·CATV·생방송 및 자막방송, KBS·재난방송 등) 3. 재난수습을 위한 보도지원 4. 각종 보도자료 작성·배포 및 재난현장 취재 지원 5. TV·라디오·신문사 등이 요청하는 각종 자료 수집 및 정보 제공 6. SNS상에 유통되고 있는 각종 재난정보 수집·분석 및 온라인 보도 대응	공보정보과
물자관리 및 자원지원	1. 방재자원 필요지역 소요현황 파악 2. 유관기관 및 자치단체, 민간보유 및 잉여자원 현황 파악 및 지원활동 전개 3. 방재자원 지원에 대한 추적 관리	안전총괄과등
교통대책	1. 재난발생지역 해상 및 항공 통제현황 파악 2. 해상 및 항공 통제상황 모니터링 3. 연안여객선, 유도선 운항 통제 실시 4. 해상 및 항공분야 긴급수송 지원	교통행정과
의료·방역	1. 재난발생지역 의료·방역 서비스 제공에 관한 현황 파악 2. 재난발생지역 의료·방역 자원배분현황 파악 및 조정 지원 3. 비상방역실시 현황 파악 4. 부상자 의료지원 및 기동의료반 편성·운영 지도·확인 5. 침수지역 및 이재민 집단급식소·위생관리 지도·확인 6.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및 기동방역반 편성·운영	보건소
자원봉사 관리	1. 자원봉사센터 설치·운영 및 지도·확인 2. 사유시설 응급복구 등 대민지원활동 추진 3. 수해주택 안전점검 및 무상수리 등 추진	주민생활지원과 건축과
사회질서 유지	1. 재난발생지역 육상교통통제 및 두절지역 파악 2. 재난발생지역 출입제한 및 차량운행통제 실시 3. 지역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우회도로 홍보 실시 4. 재난발생지역 주민혼란 방지를 위한 사회질서유지 지원 5. 고립지역 긴급수송로 개설 및 수송차량 확보·지원	경찰서
수색,구조· 구급	1. 재난지역 수색, 구조 지원 2. 재난지역 구급 지원 3. 재난현장의 특성, 2차 피해 발생 여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4. 단수지역 생활용수 급수지원 5. 수해지역 응급복구 지원	소방서 수도과
지역재난 관리책임기관 등	13개 협업 기능 유형별 주요임무 지원	

[별표 6]

**사회재난의 실무반별 기능과 역할** (제6조제1항제2호 관련)

구분	주요 기능 및 업무와 역할		담당부서
	세부 기능	주요 업무와 역할	
상황 총괄반	상황보고서 작성팀	○ 일일상황보고서 작성 및 보고	주관부서
	상황관리팀 #1. 재난상황관리 기능	○ 기상상황등 재난의 예측 및 분석·전파, 예보경보 발령 ○ 상황판단회의 주관 ○ 재난상황 파악 및 전달·처리 ○ 재난위험정보 수집, 분석, 판단 ○ 각종 여론·정보 수집, 민원 등 파악	안전총괄과
	행정지원팀	○ 주요인사 방문시 의전업무 및 방문자료 작성 ○ 상황근무자 명령 및 복무 단속 ○ 본부장·차장 특별지시사항 처리	총무과
협업 기능	#2. 긴급 생활안정 지원 기능	○ 피해주민 생활안정에 필요한 단기대책 지원 - 긴급생활안정 및 사유재산 피해 지원대책 검토 - 재난지역 세제, 금융, 전가통신료, 보험료 등 감면 검토 ○ 피해주민 구호 등 불편사항 해소 긴급대책 지원 ○ 피해주민 심리상담 지원	주민생활지원과
	#3. 긴급통신 지원기능	○ 상황실 통신·전산장비 운영 및 지원 ○ 통신시설 피해상황 파악 보고 ○ 통신 두절지역 통신인프라 복구 ○ 통신 두절지역의 이동통신 시설 설치 등 긴급통신체계 구축	정보통신담당관
	#4. 시설 응급복구기능	○ 피해시설 현황파악 및 응급복구 지원	건설과등
	#5. 에너지 기능복구기능	○ 국민생활 불편시설(가스, 전기등) 피해상황 파악 ○ 가스, 전기, 유류 등 피해시설 기능회복 지원	지역경제과
	#6. 물자관리및자원지원 기능	○ 재난관리자원 투입 실태 및 소요자원 파악 ○ 장비·인력 등 재난관리자원 응원 및 배치 등 지원	안전총괄과
	#7. 교통대책 기능	○ 교통 두절구간(도로, 항공)실태 파악 보고 ○ 통행재개 및 소통대책 지원 ○ 재난현장 출입통제, 주민대피, 범죄예방 사전조치	교통행정과 경찰서
	#8. 의료 및 방역서비스 지원 기능	○ 감염병 및 전염병 등 방역대책 지원 ○ 방역·제독 및 기동방역·제독반 편성 운영(이동초소 등) ○ 재난지역 의료서비스 등 공중보건 지원	보건소
	#9. 재난현장 환경 정비 기능	○ 재난현장 환경오염 피해상황 파악보고 ○ 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	자원순환과
	#10.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 기능	○ 재난지역 자원봉사 인력 수요 파악 및 지원 ○ 재난지역 긴급대응인력 투입 ○ 자원봉사센터 설치·운영 등	주민생활지원과
	#11. 재난수습 홍보 기능	○ 재난수습상황 브리핑 및 보도자료 작성 등 언론 대응 ○ 재난 예·경보 발령사항 등의 전파 ○ 보도사항, 신문 스크랩 분석 보고 및 자료 수집·전파 ○ 재난상황별 국민행동요령 홍보	공보정보과
	#12. 재난지역 수색, 구조·구급 기능	○ 인명구조 상황 총괄조정 및 지휘 ○ 고립지의 구조, 사상자의 응급조치 및 의료기관 후송, 안치 ○ 사상자 응급처리를 위한 현장 응급의료소 설치·운영 지도·확인 ○ 군부대와 구조·구급활동 협조 및 지원 ○ 실종자 수색 및 처리업무 등	소방서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등	12개 협업 기능 유형별 주요업무 지원	유관기관

### 군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 구성도



## [별표 7]

**사회재난 및 그 밖에 준하는 재난의 지원금액 산정기준**(제19조 관련)

구분	산 정 기 준
1. 국비와 지방비 부담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한 복구비 등의 지원은 국고 부담률을 7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2. 피해주민의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생계지원금: 정부양곡(80kg) 5가마를 기준으로 정하며,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고시한 가격을 적용한다.</li> <li>2. 응급구호비 및 장기구호비 등: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제2항 별표1에서 정한 금액을 준용한다.</li> </ol>
3. 피해지역의 복구비에 필요한 지원	<p>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관계 법령에서 별도의 산정기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 그 기준을 따르되, 별도의 비용 산정기준이 없는 경우 다음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감정평가사 또는 손해사정사가 평가 또는 산정한 금액</li> <li>2. 국토교통부장관이 운영하는 건설공사 표준품셈</li> <li>3. 정부에서 고시한 보상금 등에 관한 고시 단가</li> <li>4.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나라장터 가격</li> <li>5. 실거래 조사가격 또는 소요비용 추정가격</li> <li>6. 그 밖에 피해시설물 등의 가격을 입증하는 자료확인</li> </ol>
4. 의료·방역·방제(防除) 쓰레기 수거 활동 등에 대한 지원	의료·방역·방제(防除) 쓰레기 수거 활동 등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실비를 기준으로 산출한다.
5. 그 밖에 사항	법제66조제3항제3호, 제4호, 제6호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표 8]

**군산시 대책본부 전결사항**(제22조 관련)

일련 번호	사무내용	업무내용	담당관	통제관	총괄 조정관	차장	본부장
1	복무관리	비상단계 근무명령	○				
		근무자 출장명령•복명	○				
		현장관리관 파견		○			
		중앙 및 도 수습지원 파견			○		
		유관기관 파견요구		○			
2	상황관리	재난상황보고 및 전파	○				
		초기 상황판단회의 소집	○				
		재대본 가동 후 상황판단회의		○			
		상황판단회의 결과보고			○		
		재난 예보•경보발령		○			
		그 밖에 상황관리에 필요한 사항	○				
3	재대본 운영상황	재대본 운영상황 수시보고			○		
		재대본 운영상황 최종보고					○
4	피해조사 및 복구	피해조사단 편성 및 운영		○			
		피해조사결과 보고				○	
		재난복구계획 수립					○
5	대책본부 회의	회의소집	○				
		회의결과 통보			○		
6	특별재난지 역 선포 등	재난사태 선포여부 판단				○	
		재난사태 선포건의					○
		특별재난지역선포 여부 검토보고			○		
		특별재난지역선포 건의					○

■ [별지 제1호 서식]

### 사회재난 피해 신고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	-----	------	-----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피해 내용	피해 발생 위치:
	피해 시설명:
	피해 물량:

「군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군산시장 또는 읍·면·동장 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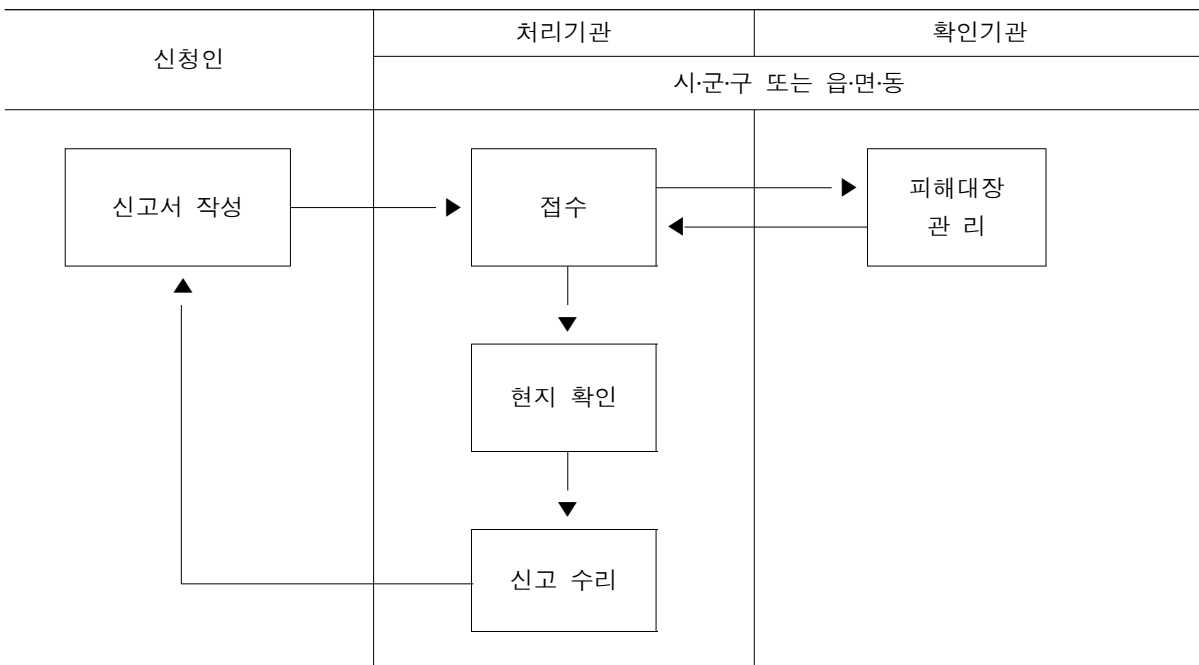
첨부서류	피해를 입증하는 사진 등의 자료 1부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별지 제2호 서식]

[관리번호:       ]

**피해 대장**

도	직	성명	(인)
담당과장	직	성명	(인)
조사자	직	성명	(인)

**1 총괄현황**

구 분	공공시설/ 사유시설
피해위치	
피해일시	년 월 일 시
피해시설명	
피해물량	
피해액	천원

**2 피해 · 복구내역**

피해내역	복구내역
○ 피해액 산출근거	○ 복구비 산출근거

※ 피해금액 산출의 근거가 되는 기초자료 별지 첨부 가능

3] 피해 현황 사진

① “사진설명”	② “사진설명”
③ “사진설명”	④ “사진설명”

군산시 고시 제 2014 - 57호

#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고시

「주택법」 제16조 5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하고 같은법 제16조 제6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4. 05. 20.

군 산 시 장

1. 사업명 : 지곡동현대엠코지역주택조합아파트신축공사

2. 사업주체

가. 지역주택조합

1) 명 칭 : 지곡동 현대엠코지역주택조합

2) 대표자 : 고 세 운

3) 주 소 : 군산시 공단대로 248, 3층 301-1호

나. 공동사업주체

1) 회사명칭 : 현대엔지니어링주식회사

2) 대 표 자 : 김 위 철

3)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3. 사업내용

가. 사업위치 : 군산시 지곡동 40-1번지의외 98필지

나. 주택구분 : 민영주택

나. 대지면적 : 20,987.00m<sup>2</sup>

다. 건축면적 : 4,567.0612m<sup>2</sup>

라. 연 면 적 : 68,244.7012m<sup>2</sup>

마. 건축규모 : 아파트 7동 16~21층, 507세대

- 전용 59.9726m<sup>2</sup> 124세대
- 전용 84.9545m<sup>2</sup> 171세대
- 전용 84.9844m<sup>2</sup> 68세대
- 전용 84.9574m<sup>2</sup> 144세대

바. 구조 : 철근콘크리트 구조

사. 사업비 : 70,531,521천원

아. 사업기간 : 2012. 06. 4 ~ 2014. 11. 25.

4. 설계도서 : 변경사항 없음

5. 주택건설사업변경승인일 : 2014. 05. 20

6. 사업계획 주요변경 내용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사업주체	지곡동현대엠코지역주택조합 · 현대엠코(주)	지곡동현대엠코지역주택조합 · 현대엔지니어링(주)	
시공자	현대엠코(주)	현대엔지니어링(주)	
사업기간	2012. 5.15 ~ 2015. 05.15	2012. 06.04 ~ 2014.11.25	증 6개월

7. 기타 자세한 사항의 서류는 군산시청(건축과 ☎063-454-3712)에 비치되어 있으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고시 제 2014 - 58호

##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고시

「주택법」 제16조 5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하고 같은법 제16조 제6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4. 05. 20.

### 군 산 시 장

1. 사업명 : 군산 조촌동센트럴파크지역주택조합아파트 신축공사

2. 사업주체

가. 지역주택조합

- 1) 명 칭 : 센트럴파크지역주택조합
- 2) 조합장 : 강갑종
- 3) 주 소 : 전라북도 군산시 번영로 196

나. 공동사업주체

- 1) 명 칭 : 주식회사 제일건설
- 2) 대표자 : 윤여웅
- 3) 주 소 : 전라북도 익산시 익산대로 124 (중앙동2가)

3. 사업내용

가. 사업위치 : 전라북도 군산시 조촌동 769-4번지의 9필지

나. 주택구분 : 민영주택

나. 대지면적 : 9,356.7000m<sup>2</sup>

다. 건축면적 : 6,437.8617m<sup>2</sup>

라. 연면적 : 78,597.0547m<sup>2</sup>

마. 건축규모 : 아파트 4동 36층, 480세대

- 전용 84.8869m<sup>2</sup> 251세대

- 전용 84.9963m<sup>2</sup> 229세대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구조

사. 사 업 비 : 111,274,477천원

아. 사업기간 : 2013년 12월 16일 ~ 2016년 12월 15일

4. 사업계획 주요 변경 사항 : 흙막이 공법 변경 및 기초 파일 일부 변경

5. 사업계획변경승인일 : 2014. 05. 09.

6. 설계도서 : 승인설계도서와 같음

7. 기타 자세한 사항의 관계도면 및 서류는 군산시청(건축과 ☎ 063-454-3712)에 비치되어 있으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고시 제 2014 - 59호

##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지정 해제 고시(안)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제5항에 따라 아래와같이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지정을 해제 고시합니다.

- 아 래 -

지구명	위 치	해제내용			해제사유	비고 (지정일자)
		유형	등급	면적(m <sup>2</sup> )		
신흥	군산시 신흥동 10-10번지	붕괴 위험	나	37,926	정비사업 완료	2006.3.2

붙 임 :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지정 해제도면 : 1부(따로붙임)

2014년 6월 2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고시 제2014-60호

### 도로명주소(부여·변경·폐지)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제6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변경·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 6. 2

군 산 시 

○ 도로명주소 부여 : 37건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별 도 열 람				

○ 도로명주소 변경 : 3건

지번주소	변경된 도로명주소	종전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별 도 열 람					

○ 도로명주소 폐지 : 81건

지번주소	폐지된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별 도 열 람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토지정보과(☎454-3983)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http://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군산시 고시 제 2014 - 61 호

#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고시

「주택법」 제16조, 같은법시행령 제15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 11조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하고 같은법 제16조 제8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4. 5. 30.

## 군 산 시 장

1. 사업명 : 미장지구 A3블럭 제일풍경채아파트
2. 사업주체
  - 가. 토지 소유자
    - 1) 명 칭 : (주)영우홀딩스
    - 2) 대표자 : 유 미 정
    - 3)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342, 에스케이허브블루 1507호
  - 나. 등록사업자(공동사업주체)
    - 1) 명 칭 : 제일건설(주)
    - 2) 대표자 : 유 재 훈
    - 3) 주 소 :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만연리 238-13, 3층
3. 사업내용
  - 가. 사업위치 : 전라북도 군산시 미장동 미장지구 A3블럭
  - 나. 주택구분 : 공공건설임대주택(임대기간 10년)
  - 나. 대지면적 : 38,911.0000m<sup>2</sup>
  - 다. 건축면적 : 7,535.6133m<sup>2</sup>
  - 라. 연 면 적 : 130,622.3894m<sup>2</sup>
  - 마. 건축규모 : 아파트 9동 20~25층, 871세대
    - 전용 79.1975m<sup>2</sup> 150세대
    - 전용 84.9038m<sup>2</sup> 571세대
    - 전용 84.3536m<sup>2</sup> 150세대
  -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구조
  - 사. 사 업 비 : 204,618,672천원

아. 사업기간 : 2013. 12. ~ 2016. 03.

4. 설계도서 : 승인설계도서와 같음

5. 사업계획변경승인일 : 2014년 5월 29일

6. 기타 자세한 사항의 관계도면 및 서류는 군산시청(건축과 ☎ 063-454-3712)에 비치되어 있으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고시 제2014 - 62 호

##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고시

「주택법」 제16조, 같은법시행령 제15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하고 같은법 제16조 제8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4. 05. 30.

### 군 산 시 장

1. 사업명 : 군산2차현대엠코지역주택조합아파트신축공사
2. 사업주체
  - 가. 지역주택조합
    - 1) 명 칭 : 군산2차 현대엠코지역주택조합
    - 2) 대표자 : 전 윤 권
    - 3) 주 소 : 군산시 수송동 852-2번지, 청담빌딩 4층
  - 나. 공동사업주체
    - 1) 회사명칭 : 현대엔지니어링주식회사
    - 2) 대 표 자 : 김 위 철
    - 3)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3. 사업내용
  - 가. 사업위치 : 군산시 옥산면 당북리 917번지의외 34필지
  - 나. 주택구분 : 민영주택
  - 나. 대지면적 : 20,480.00m<sup>2</sup>
  - 다. 건축면적 : 3,311.90m<sup>2</sup>
  - 라. 연 면 적 : 65,840.33m<sup>2</sup>
  - 마. 건축규모 : 아파트 4동 24~26층, 449세대
    - 전용 84.9838m<sup>2</sup> 403세대
    - 전용 84.9848m<sup>2</sup> 46세대
  -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구조
  - 사. 사 업 비 : 68,193,293천원

## 4. 주요변경사항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사업주체	군산2차현대엠코지역주택조합 • 현대엠코(주)	군산2차현대엠코지역주택조합 • 현대엔지니어링(주)	
시공자	현대엠코(주)	현대엔지니어링(주)	

5. 변경승인일 : 2014년 5월 29일

6. 기타 자세한 사항의 관계도면 및 서류는 군산시청(건축과 ☎ 063-454-3712)에 비치되어 있으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고시 제 2014 - 63호

##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고시

「주택법」 제16조 5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하고 같은법 제16조 제8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4. 05. 30.

군 산 시 장

1. 사업명 : 개정해양공공임대아파트 신축공사
2. 사업주체
  - 가. 명칭 및 대표자 : (주)에이스건설산업 대표이사 이정순
  - 나. 주소 :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마도공단로1길 8,  
마도지구유통업무지원시설 다동 201호
3. 사업내용
  - 가. 사업위치 : 군산시 개정면 통사리 217번지
  - 나. 주택구분 : 공공건설임대주택
  - 나. 대지면적 : 20,936.0000m<sup>2</sup>
  - 다. 건축면적 : 4,396.4715m<sup>2</sup>
  - 라. 연 면 적 : 67,057.2220m<sup>2</sup>
  - 마. 건축규모 : 아파트 6동 17~25층, 492세대
 

- 전용 59.7246m <sup>2</sup>	180세대
- 전용 84.4755m <sup>2</sup>	88세대
- 전용 84.9562m <sup>2</sup>	134세대
- 전용 84.5076m <sup>2</sup>	90세대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사. 사 업 비 : 68,840,954천원

아. 사업기간 : 2014. 7. 15 ~ 2017. 03. 15

4. 주요변경사항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사업주체	(주)구도건설	(주)에이스건설산업	
시 공 자	(주)해양종합건설	(주)에이스건설산업	
사업기간	2013.03.01~2015.10.30	2014.07.15~2017.03.15	

5. 사업계획변경승인일 : 2014년 5월 29일

6. 기타 자세한 사항의 서류는 군산시청(건축과 ☎063-454-3712)에 비치되어 있으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